

의안번호	제505호
의결 연월일	2010년 6월 일 (제290회)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5월 27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0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5월 27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서, 시·도 의회에 **교육위원회를 설치** 하고 **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** 규정함에 따라, ('06.12.20 개정, 부칙에서 '10. 7. 1.설치토록 규정)
-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상위 근거법령 명시 문구 중 「지방자치법」 외에 「**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**」 문구 추가 (안 제1조)
-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에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 외에 「**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**」 문구 추가 (안 제5조)
- 목적조항(제1조) 이후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 사용 등 일부 문구 수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조(사무처의 설치 등)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.
- ② 사무처는 의회의장(이하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- ③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사무처장(이하“처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사무처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중 “처장”을 “사무처장”으로 하며, “의회의장(이하“의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의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 (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와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로 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 1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사무처의 설치)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.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사무처의 설치 등) ①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. ② 사무처는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 ③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3조(사무처장)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(이하 “처장”이라 한다)을 둔다. ② 처장은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	<p>제3조(사무처장)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.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
<p>제4조 (전문의원) ①~② (생략)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p>	<p>제4조 (전문의원) ①~② (해당없음) &lt;삭제&gt;</p>
<p>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「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직원의 정수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와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로 정한다.</p>
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** ①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**제91조 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**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**제4조 (교육위원회의 설치)**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(이하"교육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7조 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** ①교육위원회 및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